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



[시행 2023. 3. 20.] [기획재정부령 제969호, 2023. 3. 20., 일부개정]

기획재정부 (금융세제과) 044-215-4231

- 제1조(외국의 유가증권시장) 「증권거래세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1조제3호에서 "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장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을 말한다. <개정 2009. 5. 11.>
 - 1. 동경증권거래소
 - 2. 런던증권거래소
 - 3. 도이치증권거래소
 - 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기능이 유사한 거래소로서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406조제1항제2호의 외국 거래소

[본조신설 2004. 10. 1.]

[종전 제1조는 제1조의2로 이동 <2004. 10. 1.>]

- **제1조의2(본점일괄납부)** ① 영 제1조의3제2항에 따른 본점일괄납부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.
 - ② 영 제1조의3제3항에 따른 본점일괄납부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.
 - ③ 영 제1조의3제6항에 따른 본점일괄납부 포기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다.

[본조신설 2013. 2. 23.]

[종전 제1조의2는 제1조의3으로 이동 <2013. 2. 23.>]

제1조의3(거래징수) 영 제6조에 따른 비과세양도명세서는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다.

[전문개정 2013. 2. 23.]

[제1조의2에서 이동 <2013. 2. 23.>]

제1조의4(증권계좌간 이체내역 등 제출) 영 제6조의3에 따른 주권등의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다. [본조신설 2013. 2. 23.]

- 제2조(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)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3. 16.>
 - 1.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증권거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할 세액이 있는 경우: 별지 제2호서식 부표 1의 조정환 급명세서
 - 2. 법 제10조의2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와 영 제1조의3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일괄납부 사업자의 경우: 별지 제2호서식 부표 2의 사업장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신고명세서(지점별 증권거래세 납부명세서)
 - 3.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경우: 별지 제2호서식 부표 3의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 및 주권 또는 지분의 매매계약서 사본
 - 4. 법 제6조제1호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(법 제3조제1호의 납세자만 해당한다): 별지 제1호의4서 식의 비과세양도명세서
 - 5.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17조제1항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경우: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별지 제70호 서식의 증권거래세 세액면제신청서

[전문개정 2014. 3. 14.]

제3조(장부의 비치기장) ①영 제9조에 규정하는 주권등의 거래장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. 다만, 증권거래세법 제 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는 거래권별, 양도금액, 증권거래세, 과세 및 비과세 구분을 기재한다.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②제1항에 규정하는 서식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영 제9조에 규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가 기재된 경우에는 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으로 본다.

제4조(조사증) 영 제11조에 규정하는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.

부칙 <제969호,2023. 3. 20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